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 2 호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오전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 1면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본부 산하 재단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위원장 박양숙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금년 11월 중으로 상임위 보고를 비롯한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 보건복지부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재지정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남기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한해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 기부금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접수하신 분들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은 6년을 주기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6년차가 도래하여 재지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관 제39조의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요청을 통보받아 보고자료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 개정안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남기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히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

을 교감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양숙 이복근 권미경 김선갑
김혜련 오승록 이병해 박마루
유청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

○속기사

김연화